

## 공제금수급계좌(행복지킴이통장) 변경 신청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  년   월   일

아래의 계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에 근거하여 개설한 공제금수급계좌임을 확인하고,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공제금의 수령을 위하여 공제금수급계좌로 지정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.

○ 신청인

예금주	성명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번호	
			전화번호	
주소				
거래은행	은행	계좌번호		

첨부서류 : 통장사본(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)